

제2차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11. 26.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작성자 과명 : 기획담당관

담당 : 한명수
(☎2133-6633)

팀장 : 장청락
(☎2133-6631)

과장 : 황보연
(☎2133-6610)

제2차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2. 11 .26(월) 11:00 ~ 13:00
- ◆ 장 소 : 서울시청 신관 8층 간담회장
- ◆ 참 석 : 9명(1명 불참)
 - 위원장 : 황진수
 - 위 원 : 김태윤, 박인례, 배인명, 소순창, 송영식, 유시범, 이청수, 전수봉,
※ 불참위원(1) : 이만덕 위원
 - 서울시 관계관 : 의회협력팀장
- ◆ 안 건 : 1건
 - 2013년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차 회의시 사정에 의거 불참하셨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창 위원님이십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박인례 위원님이십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덕 위원님께서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1차 회의시 결정한 잠정 의정비에 대하여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2013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1차회의시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6,400만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잠정의정비 6,400만원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를 서울시 관계관계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 회의자료에 의거 주민여론조사결과 설명 -

〈위원장〉

서울시 관계관계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정의정비 6,400만원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며 이 안에 대하여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의정비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의정비 금액에 대하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난 번 1차 회의시 사정에 의거 불참을 하였는데 잠정 의정비를 6,4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의는 잠정 의정비에 대하여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관계관〉

네, 지난번 1차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지난번 잠정의정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공무원 평균봉급 인상률 기준으로, 단순히 6,400만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전체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6,100만원이 6,400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급여인상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들의 급여인상안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의 6~70%이상이 이러한 반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5,616만원이 4% 인상된 액수인데 72.6%가 높다고 여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결정금액은 5,580만원으로 되었네요. 3.3% 인상된 걸로. 이것은 일단 외형상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400만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위원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한 위원회에서 6,400만원에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를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지난 번에 결정한 6,400만원은 기준선으로 놓아두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회의자료를 보시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6항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내용을 보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

는 것이 기속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 위원〉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여론조사결과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어법을 정리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까지 감안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지난 회의에 안 나와서 좀 그런데요. 제가 학계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 한 번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월급 인상수준에 맞춰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 말이 안 맞느냐면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의원들은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의 의정비가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한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록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3%든, 5%든 10%든 인상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1차 회의시 결정한 잠정의정비 6,400만원이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한다면 저는 지난 번 잠정의정비가 총액대비 4.9%를 인상한 것을 고려할 때 총액대비 3%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3% 인상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 위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23만원 인상시 인상률이 3.7%, 200만원 인상하면 인상률이 3.28%, 180만원 인상하면 인상률이 2.95%정도 됩니다. 요 근처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예컨대 회의자료의 타시도를 보면 동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관계관〉

회의자료에 있는 타시도 의정비 현황에서 동결이라는 것은 의정비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나 직급 같은 걸 보더라도 높은데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와 동격으로 시장직도 장관급이고 서울시의 재정규모 등을 비교해 볼 때 타 지자체보다 솔직히 적게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예산심의 규모가 서울시는 교육청 포함 30조 되죠? 경기도는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20조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아왔고 올리냐 안 올리냐 문제를

떠나서 가장 많이 받으니까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저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보다 핵심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하고 이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갭이 있는 걸로 보이므로 이것을 최소한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걸로 가야지 인상하느냐 마느냐는 중요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의정비이고 의정비는 여론에 대한 과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한도 반영을 하되 동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의정비 인상은 지난번 1차 회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았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의정비는 동결이 되었고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4년간 8.6% 인상이 되었으며 이것을 반영 해보면 한 달에 인상액이 10여만원 되는데 연 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제시를 해 보자 한 겁니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지난 번 회의를 한 거구요.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심의회를 두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의정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타시도를 참고는 할 수는 있을지언정 서울특별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서울시 의원의 의정비는 타시도 의원의 의정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의정비의 적정한 결정을 통해 의원이 현실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측면만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 의원의 의정비가 감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6,800만원인 의정비를 지난 2008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6,100만원으로 감액시킨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 아까 3.7%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

1차 회의에서는 6,1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월 정수당 적용범위 15%를 적용한다고 하면 6,323만원이 되고 인상액이 223만원입니

다. 인상률은 3.65573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높고 223만원이 좀 애매해서 200만원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인상률은 3.278%, 20만원 정도 깎은 180만원 인상하면 인상률은 2.95%입니다. 이 정도 범위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잠정적으로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적용하여 총액대비 4.96%를 적용하여 6,4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여야 할 단계입니다.

〈○○○ 위원〉

지난 주에 인터넷 서치를 하여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니 그 의견을 반영 안 한 경우는 반영 안 했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반영을 하면 반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여론이 주목을 하더라구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동결 했으니까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기업들은 어제 KDI도 그랬지만 내년도도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3%도 성장 못합니다.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서울시의회 시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지금 절대액수로 보면 낮은 액수는 아닌데,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다가올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상하한 범위가 쪽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기준 범위내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20만원 인상이면 10만원/월 인상한 결과가 되고 180만원 인상이면 15만원/월 인상한 결과 대충 나옵니다. 아주 크리티컬하게 말씀드리면 70만원 정도 인상명분은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75만원 인상 정도는. 왜냐하면 비난여론이 많을 것임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주민여론의 1/4이 낮다고 한 의견은 반영해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0만원 인상(안), 180만원 인상(안), 240만원 인상(안) 세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네 ○○○ 위원님 세 가지 안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20만원 인상, 180만원 인상, 240만원 인상. 240만원 인상(안)보다는 120만원 인상(안)이나 180만원 인상(안)에 방점을 두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과거보다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성장률,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검토대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잠정 의정비 금액은 최근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 8.6%를 고려해서 그 절반 수준인 4.9%가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지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오늘은 지난 번 회의시 결정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여론 조사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의정비 6,400만원을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조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의정비가 최근 4년간 동결되어온 점. 어려운 경제사정, 주민의견 수렴결과 타시도 의정비 인상률 등 제반 상황을 고려 할 때, 잠정 의정비 인상액 300만의 절반정도인 150만원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결정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의 접근방식 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제 말씀은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올린다는....

<○○○ 위원>

너무 의정비가 높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그냥 경제성장률,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의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을 최소한도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논리적으로 적용했다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렵고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려야 된다 이런 당위성보다 그 직책이 다른 직책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대로 그대로 올리는 것은 1차 회의 때 결정한 안대로 그대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추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부분 거의 걱정내지는 70% 정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안 되지 않나.....

<○○○ 위원>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추겠다고 거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의정비가 높다고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

인상을 하되 우리가 4.9% 정도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서는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을 인상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 위원님은 180만원, 200만원, 223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셨습니다.

○○○ 위원님은 300만원(4.9%) 인상안의 절반인 150만원(2.4%) 인상안을 제시하셨습니다.

○○○ 위원님은 경제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므로 현재 상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님은 시의원의 겸직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 위원님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오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몇 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정리가 안 될 경우 포결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리를 하면 ○○○ 위원님하고 ○○○ 위원님하고, ○○○ 위원님 세 분은 조금이라도 올리자,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은 그런데 올리더라도 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만 올리자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생각을 주신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의견 세 안 중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그러면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최종안을 각자 내놓고 제청을 받아 보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은 150만원 올리자, ○○○ 위원님은 180만원 올리자. ○○○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위원>

180만원 인상은 전년 대비 2.95%인 것이죠?

<○○○ 위원>

4년 동안 동결된 사항을 볼때 2008년 대비 2.95%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 세 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해 주시죠.

〈○○○ 위원〉

최소한 120만원(안) 인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120만원이면 몇 % 인상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관〉

1.96%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 위원님은 원래 300만원에서 50% 깎아서 150만원으로 하자, ○○○ 위원님은 2.95%를 인상해서 180만원 하자. ○○○ 의원은 최소 120만원 인상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

저는 180만원 인상안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 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님이 제안한 150만원 인상(안)에 대한 제청 없습니까?

〈○○○ 위원〉

저는 최소 120만원(안) 포기하고 우리 ○○○위원님 안에 제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

여론조사결과 반영하여 당초 결정한 잠정의정비의 반만 올리는 것이 명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 안에 대한 제청이 한 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150만원 인상이나 180만원 인상이나 둘 중 하나입니다.

〈○○○ 위원〉

명분을 아까 ○○○ 위원님이 왜 이 액수로 올렸는가에 대한 명분과 타당도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회의자료에 있는 공무원봉급인상, 물가인상, 서울시의 각종 지표 등을 고려하여 150만원 인상안과 180만원 안 중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그걸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주민여론조사를 보면 아마도 10만원 인상한다 해도 반대가 많을 겁니다.

〈○○○ 위원〉

왜 10만원으로 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해서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9% 인상할 때 경제성장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다 반영해서 4.9%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 보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서 얼마를 올렸다 이것을 봐 주시는 거죠.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차 의정비심의위에서 내년도 4.9%를 인상(연 300만원 인상)한다는 1차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75%가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서 15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느냐 180만원으로 낮추느냐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번 의정비 인상금액은 위원님들의 의견일치가 되는 금액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

150만원 인상안은 당초 의정비 4.9%인상안에서 주민여론조사결과 잠정 의정비를 낮추라는 의견과 경제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로 낮춰 제안한 사항입니다.

〈○○○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신지요?

그럼 ○○○ 위원님이 제안한 15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안을 볼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낮춰서 해야됨을 고려하여 아쉽지만 150만원 인상안이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럼 의정비 150만원 인상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의견 있는 위원 없음)

〈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2013년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총액대비 150만원(2.45%)를 인상하여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4,450만원으로 총 6,250만원으로 결정합니다.(의사봉 3타)

1차회의 4.9% 300만원 인상(안) 의결에서 여론조사 75%가 높다고 한 것을 이것을 재조정해서 150만원 인상(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